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32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윤후덕 · 임미애 · 염태영
백혜련 · 한정애 · 서영석
이광재 · 홍기원 · 어기구
전진숙 · 김정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임차자금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지, 자녀의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도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5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전세 세입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으로,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제4항·제5항”을 “제1항·제4항·제5항·제7항”으로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4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그 배우자의 제4항 본문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4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⑥ (생략)

<신설>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
-----.

-----500만원-----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4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공제대상금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그 배우자의 제4항

⑧ <u>제1항·제4항 및 제5항</u>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⑨ <u>삭 제</u> ⑩ <u>제1항·제4항·제5항</u>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 공제”라 한다. ⑪ (생 략)	<u>본문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u> 1. <u>제4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u> 2. <u>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u> ⑧ <u>제1항·제4항·제5항 및 제7항</u>----- ----- ----- ----- ----- -----. ⑩ <u>제1항·제4항·제5항·제7항</u>----- -----. ⑪ (현행과 같음)
--	---